# 대 전 지 방 법 원

## 판 결

사 건 2007가단870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07가단43846(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0000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00동 838 0000타워

대표이사 황00

소송대리인 김준모

피고(반소원고) 이00

인천 남동구 00동 1297 000000빌딩 4층

송달장소 대전 서구 00동 1160 000빌딩 5층

변 론 종 결 2007. 8. 24.

판 결 선 고 2007. 9. 21.

## 주 문

- 1. 별지 '피고(반소원고)가 주장하는 보험사고'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 중 재해상해특약1, 2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7,000,000원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지급하라.

###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 1. 주장 및 판단

피고는, 2004. 9. 27.경 별지 '피고(반소원고)가 주장하는 보험사고'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받아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의 약관에서 정한 4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으므로, 위 보험계약 중 재해상해특약1, 2에 기한 보험금 2,700만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던 도중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사고에 의하여 그와 같은 장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고는 이사건 보험계약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4, 8,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기왕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추간판탈출증을 입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의 주장대 로라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에게 꽤 강한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6일이 경과한 2004. 10. 14.에 이르러서야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 를 받은 점, ② 피고는 진료를 받기 위해 사고 이후 처음 방문한 병원에서 '8개월 전부 터 허리, 다리가 아프다'고 진술하면서 발병원인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외근 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부터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든다'고만 하였을 뿐 '미끄러지며 엉덩방 아를 찧어 허리를 다치는' 내용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던 점, ③ 피 고는 2004. 10. 15.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요양신청서에서도 재해의 원인 및 발생경위 와 관련하여 '2004. 9. 말쯤 자재과에서 약 30kg 되는 제품박스를 급하게 차에 올리는 과정에 갑자기 허리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심한 통증에 의해 그 자리에 주저 앉았다' 고만 기재하고, 재해의 발생형태에 대하여도 '미끄러짐·넘어짐' 대신 '무리한 동작'에 만 표시하였을 뿐인 점, ④ 피고가 2005. 3. 7.경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에는 '2004. 9. 말경 다쳤다'고 진술하였으나. 다친 경위에 대하여는 진료기록지에 자세하게 기재되 어 있지 아니하고. 나아가 그 진료시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수술특약, 입원특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청구를 하기 시작한 2004. 12.경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11호증의 기 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와 피 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재해상해특약1, 2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700만원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000 \_\_\_\_\_

# 피고(반소원고)가 주장하는 보험사고

피고(반소원고)가 2004. 9. 27.경 피고(반소원고)의 근무장소에서 약 30kg 되는 무거운 제품박스를 급하게 차 위로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미끄러지며 엉덩방아를 찧어 허리를 다친 사고. 끝.

#### 보험계약의 표시

보험명: 무배당 종신보험

증권번호 : 1660004586

계약자, 피보험자, 장해시 수익자 : 이00

계약일자 : 2004. 8. 20.

진단여부 : 무진단

보험가입금액: 주계약 - 35,000,000원

재해상해특약1 - 35,000,000원

가족수입특약 - 30,000,000원

정기특약 - 55,000,000원

재해상해특약2 - 55,000,000원

재해사망특약 - 100,000,000원

수술특약 - 20,000,000원

CI(2종)특약 - 10,000,000원

입원특약 - 30,000,000원

암특약 - 10,000,000원. 끝.